

이슈페이퍼 2018-08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아름

1. 서론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문제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참고문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아름 부연구위원

| 요약 |

-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를 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 및 발견, 조치, 사후관리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상당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출된 ‘기금’에서 예산이 마련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 기관들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원들은 조사원증을 발급받는 등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실제 경찰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여 아동 및 복지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신고체계는 경찰의 112센터로 통합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루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신고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후 사건의 진행 속도나 결과가 달라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인 신고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1 서론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 본 원고는 「김아름·박은영·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자극적인 기사와 소재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 자체와 관련자의 처벌 여부 등에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관리, 향후대처 등 사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짐.
-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를 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지금부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 및 발견, 조치, 예방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권고사항 44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권고사항 45항)을 권고하였음.
-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 및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과 법제도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문제

가.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정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 콜센터로 통합하여 24시간 신고와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나 긴급개입 등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에 10,146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4,2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7년 21,524건으로 조사되었음(표 1 참조).

〈표 1〉 아동학대 발생건수

단위: 건

| 구분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아동학대 신고건수 | 10,146 | 10,943 | 13,076 | 17,791 | 19,214 | 29,669 | 34,221 |
| 아동학대 의심건수 | 8,325 | 8,979 | 10,857 | 15,025 | 16,651 | 25,873 | - |
| 아동학대 판정건수 | 6,058 | 6,403 | 6,796 | 10,027 | 11,715 | 18,573 | 21,524 |

자료: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88; 관계부처 합동(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p.16 재편집.

- 한편, 2016년을 기준으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 피해아동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06).
 -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학대 사례 전체 건수 중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와 주요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영유아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불안정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06).
 - 더 나아가 2017년의 경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비율은 전체의 80.6%에 해당하고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3), 이처럼 영유아의 경우 중대학대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표 2 참조).

〈표 2〉 2017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현황

| 연령 | 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9세 | 12세 |
|-------|----|----|----|----|----|----|----|----|----|----|----|-----|
| 사망자 수 | 31 | 12 | 2 | 3 | 3 | 2 | 3 | 1 | 2 | 1 | 1 | 1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p.3.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인프라 현황

-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201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었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한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43개소에서 2017년 현재 60개소로 증가하였음(표 3 참조).

〈표 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단위: 개소

| 구분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5 |
|----------|------------|------|------|------|------|------|------|--------|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 43 | 46 | 50 | 50 | 55 | 59 |
| 학대피해아동쉼터 | | - | - | - | 36 | 40 | 53 | 54 |

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부터 통계 관리
 자료: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87.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표 3 참조), 2015년에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조치된 피해아동 3,110명 중 쉼터를 이용한 아동은 830명(21.3%)으로,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1~2명씩 배치하여 2014년 190명에서 2015년 315명으로 증가하였음. 2016년 5월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개소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고 있음.

다.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체계

- 2014년부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동행 출동체계(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를 마련함에 따라 경찰 동행출동은 2013년 552건에서 2016년에는 14,594건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그 비율은 전체 현장조사 건수에 27.3%에 불과함(표 4 참조).

〈표 4〉 2016년 현장조사 동행 현황

단위: 건

| 상담원 | 경찰 | 상담원· 경찰 | 상담원· 공무원 | 경찰· 공무원 | 상담원·경찰· 공무원 | 계 |
|-------------------|------------------|-------------------|---------------|---------------|-----------------|--------|
| 30,210 (56.6%) | 5,720 (10.7%) | 14,594 (27.3%) | 718 (1.3%) | 114 (0.2%) | 2,045 (3.8%) | 53,401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94.

라. 현행법상 유관기관의 범위와 역할

-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행정부처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등에 관련 기관과 역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진행되기도 하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단계들에 있어서 절차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

- 지난 2000년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다만, 이 시기에도 국가가 아동보호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기보다는 그 기능과 주된 역할을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져 왔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위험성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인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법공조체제가 수립되었으며, 형사사법체제 내에서의 사건처리가 본격화되었음.
- 이처럼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조치가 개선되는 등 사건처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원인은 우선 정비되지 않은 법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에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 당시의 필요에 충실했던 관계로 법체계와 제도상 어색한 모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및 발생건수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인프라는 아동학대의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그 책임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즉,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대응체계와 지원이더라도 관련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공방이주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도식처럼 되어 있는 지금의 체계를 단순화하여, 권한과 기능을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의 마련과 인력의 확충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가. 미국

-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상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연방과 협력하여 지방(주정부) 중심의 보호체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민간과 연

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실상 지방정부(State, County 등)를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연방정부의 개입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연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치들이 발전하게 되었음.
 - 동 법에서는 신체, 정서, 성적, 유기 및 방임 등으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학대에 대한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를 구축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방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각 주가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제도, 조사 및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인 수단들을 규율하게 됨.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음.

 - 신고, 조사 및 평가절차에서 부모 등 성인의 관점에서 친권보호를 우선시하지 않고,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예컨대 아동학대 발견 이후 학대의 정도,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격리, 친인척 입양, 면접권 인정 등)을 모색함.
 - 특히 최근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짐.
-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된 민간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양육지원, 건강교육 등의 여러 영역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간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에 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율되어 더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나. 영국

-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의 인권보다는 부모의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영국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정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았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담은 “Every Child Matters”에 관한 정책제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
- 영국의 아동법, 아동복지법은 사인·지방 및 중앙정부·법원 등 여러 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Working Together”)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사인(당사자, 주변인)이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 및 중앙 정부에서도 직접 아동학대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운영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적극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 발견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요 행정절차인 조사, 평가, 관리체계에서도 중앙정부 내 각 부처(보건부, 내무부, 교육부)의 협력,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였음.
 - 한편, 긴급조치 및 법원의 보호조치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강조되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협력적 보호체계를 활용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민간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나 주무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학대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독일

-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법체계의 정비 및 규정의 세세함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연방가족부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아동의 성적 학대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심을 통해 아동의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에 앞장서고 있음.
- 독일의 아동학대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과 가정법원(Familiengericht)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청소년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권한의 부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법부처와 민간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업무의 범위가 넓히고 설켜져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그 도식이 매우 복잡함.
 - 그러나 독일은 행정관청인 청소년청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대아동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는 등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혹은 의심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응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라. 일본

-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일본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시정촌과 같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보건포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임신기부터 취학 전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불안·고립감 등에 대응함으로써 영유아의 학대치사 등

- 아동학대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감소시킬 수 있도록 아동육아지원 시스템을 강화함.
- 또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신부나 영유아 모친을 평소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의료 기관이나 육아지원시설, 학교 등에서 그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가장 가까이에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임.
- 일본 「아동복지법」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상담소를 확대 설치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동상담소에 아동심리사, 의사 또는 간호사, 전문 아동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상담 또한 가능하도록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력배치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지원과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단일화

- 최근 발표된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논의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것임.
- 그동안 민간에 의지하던 대응체계를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 요지임.
 -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기관화” 보다는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임.

- 한편,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다수 존재하며, 이외에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음.
 - 이는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가 나타남. 조직과 기능의 분산은 효율성 저해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를 필요로 함.
 -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의 신설을 통해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함.
 - 즉,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신규 범정부부처(가칭 아동청)로 하고, 그 산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둬으로써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절차를 간소화 혹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전환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되는 예산은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내는 벌금에서 조성되는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 판매에 따른 수입에서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마련되고 있음.
 - 실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임.
 - 매년 약 600-7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만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등의 보호업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자칫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동 기금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출을 늘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같은 조성 기금의 본래 목적에 저해될 수 있어 이를 통해 또 다른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운영예산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100%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국비(50%)와 지방비(5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40%)와 지방비(60%)의 비율을 통해 예산이 마련되고 있음.
-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에 의거하여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등도 가능함.
 - 또한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활용을 위한 대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등의 업무는 첫째, 국가의 감독 하에서 혹은 국가 주도의 국가사무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부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따라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여 정부는 더 큰 감독권한을 갖고, 현재의 아동 보호전문기관에는 더 큰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의 부여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제한적인 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56.8%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음.
 - 우리 법체계상 경찰은 원활한 사례개입에 필요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보건복지부, 2017: 216),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 1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경찰은 신고접수, 동행출동, 현장조사, 수사 및 재학대 조기발견으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으며,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시스템 상으로는 비교적 안

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 동행하는 비율은 전체 건수의 1/3에 불과하므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아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절차는 아동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는 아동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임.
 - 이는 경찰이 전담부서 및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출동 시에 전담경찰관과 동행이 어렵거나, 혹은 112 등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초동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심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업무의 폭증으로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함.
 -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 또한 제한된 경찰력의 한계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 있어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됨.

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전화는 2014년 9월 29일 이후로 경찰신고(112)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소방서, 인터넷 신고, 내방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된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52.1%로 가장 많았고, 112는 47.1%, 1366은 0.5%, 129는 0.2% 순임(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
 - 이는 현행 경찰의 112 시스템으로 신고체계가 통일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신고자가 신고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식이나 절차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현장출동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거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과 동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더 나아가 아동학대 처리절차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신고체계의 완전한 일원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처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및 사후관리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보의 관리체계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처별 혹은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신고체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자체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관심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처우는 달라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폭넓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감독권한 등을 갖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모색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신고에 관한 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이 위원회를 통해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기 보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책임·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례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동복지법」제28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학대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1조), 학대사건 이후의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 등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적·물적 한계는 아동보호를 위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사례로 나누어,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는 아동이나 복지전문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도록 하고, 저위험군의 사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사례관리의 판단은 사례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적 구성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2018).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 김아름·박은영·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 보건복지부(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 보건복지부(2017).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